

참고 1

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

① 전년도 납부세액의 1/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

- A주식회사(중소기업)의 2004년 법인세 신고내역
  - 과세표준 : 500백만원
  - 산출세액 : 123백만원
  - 감면세액 : 23백만원(임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원 포함)
  - 납부세액 : 100백만원
  - 최저한세 상당액 : 50백만원(500백만원×10%)
    -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
- \* 2005년 1월 ~ 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

[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]

①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: 45백만원

[직전연도 산출세액(113백만원) - 직전연도 감면세액(23백만원)] × 6/12 = 45백만원

\* 직전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= (1억원 × 13%) + (4억원 × 25%) = 113백만원

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: 20백만원(①과 ②중 작은 금액)

① 2005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3억원 × 10% = 30백만원

② 한도액 : 20백만원

\* 한도액은 [중간예납세액상당액(45백만원)] - [최저한세상당액(50백만원)의 1/2(25백만원)] = 20백만원으로 계산

③ 2005년 중간예납세액 : 25백만원

중간예납 상당액(45백만원) - 임시투자세액공제액(20백만원) = 25백만원

## ②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

- B주식회사(중소기업)의 2005년 상반기(1월 ~ 6월) 결산내역
  - 과세표준 : 200백만원(총익금 600백만원 - 총손금 400백만원)
  - \* 2005년 1월 ~ 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

### [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]

#### ①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: 44백만원

- ① 1월 ~ 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
⇒ 과세표준(200백만원) × 12/6 × 25%(1억이하 13%) = 88백만원
-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(88백만원)을 중간예납기간(6/12)으로 환산  
⇒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(88백만원) × 6/12(중간예납기간) = 44백만원

#### ② 최저한세 : 20백만원

⇒ 과세표준(200백만원) × 10% (일반법인인 경우 13%) = 20백만원

####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액 : 24백만원(①과 ②중 작은 금액)

- ① 200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3억원 × 10% = 30백만원
- ② 한도액 : 24백만원
  - \* 한도액은 [중간예납세액상당액(44백만원)] - [최저한세상당액(20백만원)]  
= 24백만원으로 계산

#### ③ 2005년 중간예납세액 : 20백만원

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(44백만원) - 임시투자세액공제액(24백만원) = 20백만원

## 2005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

### 법인세 중간예납이란?

-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
  - 전년도 법인세의 1/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
  -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
  - \*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

### 1. 중간예납 신고·납부대상 법인

-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함
  - ※ 대상법인 : 295천개, 2004년(256천개) 보다 39천개 증가
- ◆ 예외 -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
  - 2005년도 중 신설법인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)
  -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(신고 필요)
  -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
  -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
    - \* 다만, 2005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·납부의무가 있음
  -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, 증권투자회사,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,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
  -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
  - 조특법 §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
    - \*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(7년간 감면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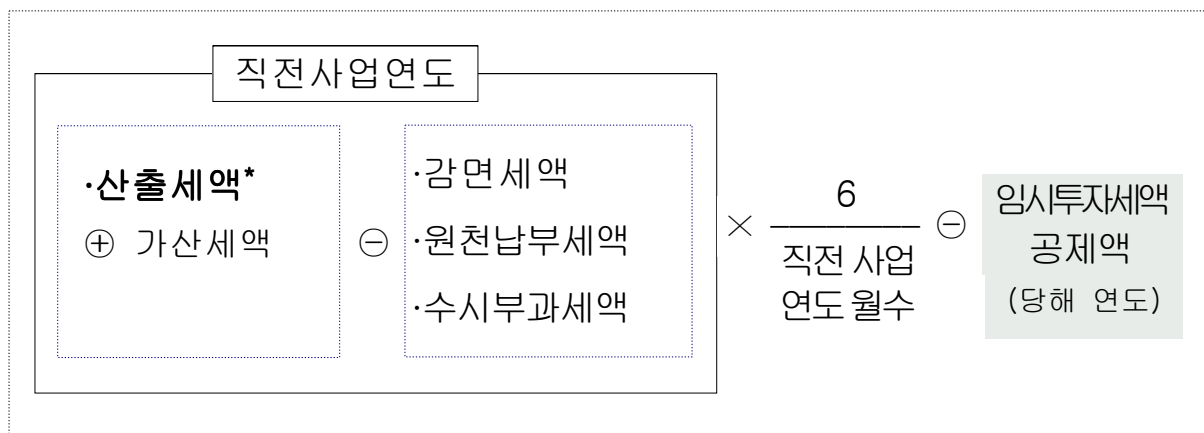
## 2. 중간예납 신고·납부

-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함
-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(중소기업의 경우 45일) 이내 분납 가능
 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- \* 분납기한 : 9월 30일 (중소기업 10월 17일, 10.15일이 토요일)
- \* 중소기업 : 제조·건설·도매·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,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

## 3.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

### □ 원 칙

-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(후자법인)
  -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



\* 붙임 계산사례(1)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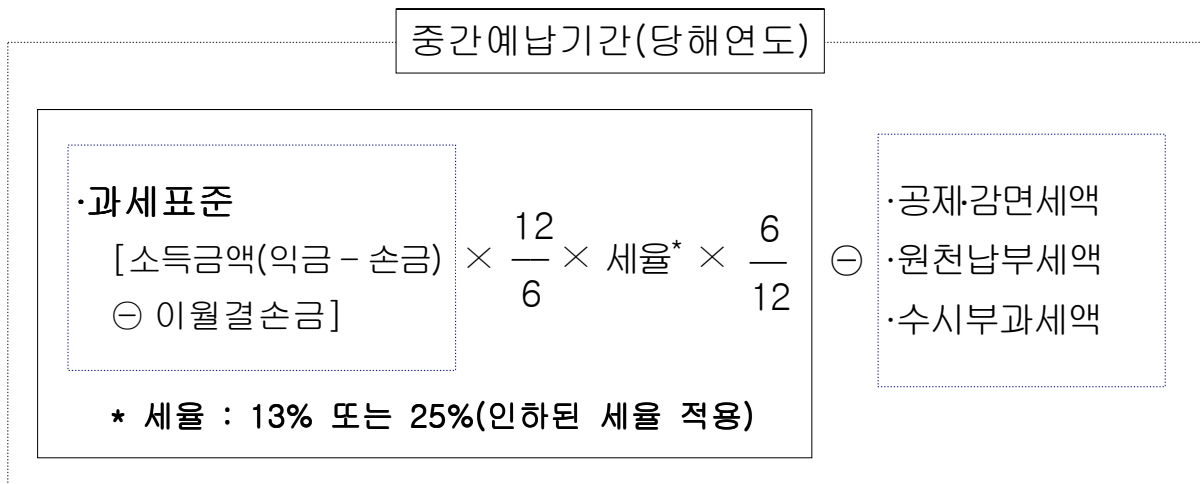
-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재계산

·2005.1.1.부터 인하된 법인세율(13%,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25%)이 적용되므로,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함

$$* \text{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재계산} = \left[ \text{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} \times \frac{12}{\text{직전사업연도 월수}} \right] \times \text{세율} \times \frac{\text{직전사업연도 월수}}{12}$$

○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(적자법인)

→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



\* 붙임 계산사례(II) 참조

- 세율

·2005.1.1. 개시사업연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13%(과세표준 1억 초과분 25%) 적용

□ 예 외

○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

## 4.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

### □ 전자신고 대상자

-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

### □ 전자신고 방법

#### ○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·납부자

-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(변환)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
  - \* 신고서 작성방식 :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
  - \* 신고서 전송방식 :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

#### ○ 자기계산(가결산)기준 신고·납부자

-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
  - \* 정기신고와 동일

- \*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서비스(<http://www.hometax.go.kr>)의 [전자신고] - [이용안내] 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
- \*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- 전자신고 - 전자신고소개(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) - 법인세(무료)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

### □ 전자신고 대상서식

#### ○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(2종)

-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및 세액공제신청서

○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(15종)

-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,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, 표준재무제표, 세액공제신청서 등(붙임 서식목록 참고)

\*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

□ 신고기한 : 2005. 8. 31. 24:00까지 전송완료

\* 전자납부는 19시까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음

## 5.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

-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·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을 추징

\* 가산세 : 연 10.95% (미납부세액 × 1일 0.03%)

### 불성실 신고·납부유형

-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부실 가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·납부하는 경우
-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
-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
-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

\* 국세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ts.go.kr>) 접속후 『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』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, 세액계산방법,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참고 3

##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

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

연번	서 식 명	근거규정
1	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
2	세액공제신청서	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

□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

연번	서 식 명	근거규정
1	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
2	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
3	소득금액조정합계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
4	표준대차대조표(일반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2 (1)
5	표준대차대조표(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2 (3)
6	표준손익계산서(일반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3 (1)
7	표준손익계산서(금융·보험·증권업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3 (2)
8	부속명세서(제조·공사·임대·분양·운송·기타원가명세서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3 (3)
9	가산세액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9호
10	최저한세조정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호
11	원천납부세액명세서(갑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(갑)
12	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(을)
13	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5호
14	세액공제신청서	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
15	세액감면(면제)신청서	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